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67
----------	---------

제출연월일	2005. 1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200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 지정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0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 지정

- 변경 : 지역개발과장 ⇒ 도시건축과장
 - 추가 : 산림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 재난과 관련이 높은 부서

■ 개정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제2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16호중 “거창지점장”을 거창지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림환경과장
9. 건설과장
10. 도시건축과장
11. 재난안전관리과장
12. 농업기술센터소장
13. 상하수도사업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7. (생략)8. <u>건설과장</u>9. <u>지역개발과장</u>10. <u>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u>11. <u>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u>12. <u>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점장</u>	<p>제2조 (구성)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8. <u>산림환경과장</u>9. <u>건설과장</u>10. <u>도시건축과장</u>11. <u>재난안전관리과장</u>12. <u>농업기술센터소장</u>13. <u>상하수도사업소장</u>14. <u>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u>15. <u>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u>16. <u>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사장</u>